

(앞쪽)

제	호
가축방역관증 (동물검역관증)	
사 진 3cm × 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	
성 명 농림축산식품부/시·도/시·군·구/ 농림축산검역본부/국립축산과학원	

55mm × 85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바탕색: 노란색)

(뒤쪽)

가축방역관증(동물검역관증)	
소	속:
직	위:
직	급:
성	명:
생년월일:	
위 사람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(제30조)에 따른 가축방역관(검역관)임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농림축산식품부장관/ 시·도지사/시장·군수·구청장/농림축산검역본부장/국립축산과학원장	
직인	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.	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	